

# 배상 요구와 의무의 상속성

## ‘위안부’ 여성들의 후손에 대한 배상

다니엘 버트(Daniel Butt)

브리스톨대 교수

“우리에게 예전 사람들을 맴돌던 바람의 속삭임이 스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목소리들에는 이제는 침묵해 버린 그들의 메아리가 울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구애하는 여인들에게 그들이 더는 알지 못하는 자매들이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과거 세대의 사람들과 우리들 사이에는 은밀한 약속이 있는 셈이다. 그 까닭은 우리는 이 지상에서 기다려져 왔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우리 이전에 존재해 왔던 모든 세대와 마찬가지로 희미한 메시아적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과거는 이 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요구는 가볍게 진정되지 않는다”(Benjamin 1940).

### I. 서론

이 글은 2차 대전 동안 일본군이 저지른 “위안부” 제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재의 세대들이 배상받을 권리 또는 배상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주장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집단으로서의 일본인들이 오늘날 위안부 제도의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범위에는 위안부 여성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로부터 배상받을 권리를 물려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후손들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려고 한다. 이는 역

사적이기보다는 이론적인 주장이다. 나는 2차 대전 기간 동안 강압적인 성적 노예 상태에 종속되어 있었던 여성들의 수를 경험적 자료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한국·중국·일본을 포함한 다양한 국적의 여성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일 것이다. [따라서] 나의 주장은 그러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의 수나 국적에 상관없이 위안부 여성들과 그들의 후손과 관계된다. 나는 이들 여성들이 겪은 처우가 심각한 부정의를 수반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이 문제는 위안부 제도가 강압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2007년 아베 신조 총리의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일본 내에서는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이다. 강제적으로 동원된 여성들의 수와 범위가 적지 않은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sup>1)</sup> 나는 그의 주장과 상반되는 역사적 증거들이 완전히 확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글에서 이에 대해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sup>2)</sup> 그 대신 위안부 제도를 극단적으로 심각한 범죄행위로 봐야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또한 현재까지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일본이 지니는 [과거사에 대한 교정의 의무(rectificatory obligation)]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이 글을 통해 앞으로 명확해 지겠지만, 글의 서두에서 사적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형성된 비정부적 자원을 바탕으로 배상을 제공하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Asian Women's Fund, 이하 '아시아 여성 기금')의 설립이나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발표한 사죄의 내용으로는 위안부 제도의 생존자들이 겪은 부정의를 바로잡는 역할에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 다수가 이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안부

---

1) 아베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실제 강압이 있었는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어왔습니다.……그러나 애초에 제기된 바와 같이 강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는 사실상 아무 것도 없습니다"(http://news.bbk.co.uk/1/hi/world/asia-pacific/6411471.stm, 검색일: 2010년 2월 7일).

2) 이에 관한 내용은 Yoshimi(2002)를 참조.

여성들에 대한 처우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정치적 문제가 되어 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sup>3)</sup>

본격적인 주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언급해 둘 점이 있다. 일본이 2차 대전이 끝난 이후로 위안부 제도의 희생자에게 심각한 부정의를 저질러 왔다는 것이다.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지 않아서 생긴 이와 같은 심각한 부정의를 분명 [일본에 국한된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나의 이론적 접근의 결론은 이러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이 오늘날에도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여기에는 근대화되고 산업화된 민주주의 국가들도 다수 포함된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의를 바로잡지 않았던 나라들이 그러했던 나라보다 더 많은 도덕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내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여 온 행동은 특히 부끄러운 일이다. 공개적으로 현 세대의 책임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협소한 동기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반박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이 부정의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어지는 글에서 나는 부정义的한 행동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부정의를 낳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것은 최초로 저질러진 부정义的한 행동이 대부분 묵살되거나 잊혀진 경우에도 해당되지만,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을 의무를 지닌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라는 반복된 요구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정의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를 의문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말 그대로 모욕을 주는 경우에 더욱 분명해진다. 그러나 부유한 산업 민주주의 국가 중 자신이 저지른 역사적 행위를 인정하고 대처해야 하는 국가가 비단 일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영국 정부는 1952년부터 1960년까지 케냐의 “국가 비상사태” 기간 동안 육체적·성적으로

---

3) 배상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 관해서는 Brooks(1999)와 Barkan(2000)을 참조.

학대당했다는 4명의 케냐인들의 배상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sup>4)</sup> 왜냐하면 대영 제국의 식민지였을 당시 식민 정부가 저지른 행위는 현재의 케냐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국가승계법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이다(Hirsch 2010). 역사적 부정의를 바로잡으려는 진지한 노력들은 [보편적] 규범을 형성하기보다는 여전히 예외적인 경우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규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고통을 겪은 다른 피해자들의 요구도 묵살되어 왔다는 사실이 끔찍한 범죄행위를 겪은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II. 상속과 역사적 부정의

인류 역사의 많은 부분이 엄청난 범죄행위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주장이다. 모든 문명은 다양한 이유에서 역사적 인물들이 오늘날에는 심각한 부정의라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행동했던 과거의 사례들을 감추고 있다. 과거의 역사적 행위가 현재의 시점에서 권리와 의무를 낳는지에 관한 문제는 매우 논쟁적이다. 이것은 과거의 개인이나 사회가 지녔던 도덕성을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다. 만약 우리가 역사적 인물들이 칭찬받을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

4) [역자주] 1890년 영국과 독일이 동아프리카의 분할 점령에 합의한 이후, 1895년부터 케냐는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 1914년 1차 대전 발발 전까지 영국은 케냐 내륙을 개척하면서, 현지 부족의 반발을 억압하였다. 이를 통해 1920년 케냐는 영국의 직할 식민지가 되었다. 1948년, 케냐의 키쿠유족이 조직한 반제국주의, 반백인 저항 단체인 마우마우단(Mau Mau)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1952년부터 약 4년 간 마우마우단은 케냐에서 유럽인들을 축출하기 위한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이에 1952년 10월 영국 식민지 당국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마우마우단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 1959년 12월까지 영국은 7년 동안 무려 3천 5백여 명의 케냐인을 학살하였으며, 10만 명 이상을 수용소에 가둔 채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한 세뇌 공작을 펼쳤다. 마우마우단의 봉기로 선포된 비상사태는 196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다.

도덕적으로 판단하려고 했다면,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당시의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리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려면 당시의 도덕적 기준을 꼭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이를 고려해야 하고, 정책 결정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 이용한 정보나 그들에게 가해졌던 압력을 눈여겨 봐야 한다. 그러나 역사적 행위가 정의롭지 못했는지 판단할 때에는 타인을 잘못 대우했는지, 특히 타인에게 해악을 가했는지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 경우 당시에 그러한 행위가 어떻게 정당화되었는지,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윌리엄스(Bernard Williams)가 말했듯이, “무엇보다 정의의 관점에서 평가를 내리는 것은 누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도움되지 않는 질문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Williams 1985, 166). 아마 오늘날의 용어로 과거에 저질러진 부정의를 판단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권리의 침해에 대해 말하는 것일 것이다. 과거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받아서는 안 되는 대우를 받았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겼다. [이처럼] 이익의 박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부정의들을 포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불법 침해나 소유권의 강탈, 표현의 자유에 대한 거부를 떠올려 보면 알 수 있고, 살인, 고문, 노예화, 강간 등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들이 과거의 끔찍한 잘못에 대해 역사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지게 되면 어떠한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한 가지는 ‘미래지향적’인 반응이다. 과거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질문함으로써 역사적 기록을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이와 달리 ‘과거지향적’인 접근을 취할 수도 있다. 이것은 역사적 기록을 미래의 행동을 유도하는 교훈으로 삼기보다는 과거의 해악이 지속적으로 남기고 있는 결과에 주목하고, 이것이 오늘날 어느 정도의 권리와 의무를 낳는지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과거의 부정의를 인정하는 것은 단지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미래에 더 나은 행동을 하겠다는 명시적인 약속을 하는 것으로 그쳐야 하는가? 아니면 역사적 부정의를 바로잡으려는 의미심장한 인식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여기서 과거의 잘못을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두 번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내가 당신의 집을 불태웠다면, 내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그러한 행위가 초래한 것들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정의에 부합할 것이다. 이 경우엔 집과 재산뿐만 아니라 내 행위로 인해 당신이 놓친 기회와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같이 그러한 행위와 연관된 손실까지도 배상해야 한다. 앞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불을 지르지 않고 참겠다고 하는 것이 필요한 전부라고 하는 것은 분명 가해자로서 나의 지위와 피해자로서 당신의 지위가 담고 있는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이것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정의한 행위가 자행되었던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다른 세대들의 문제가 되면 상황은 불명확해진다. 만약 부정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아무도 살아 있지 않다면 왜 우리는 과거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가? [이런 경우라면 미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사리에 맞지 않는가? 월드론(Jeremy Waldron)은 역사적 부정의를 바로잡으려는 관심보다는 “미래의 정의에 대한 정직하고 분명한 결의,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의 주장과 필요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상황을 다루어 나가려는 의지”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결의는 “전망적 정의론(prospective theory of justice)이 제시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에 있는 배상에 대한 요구보다 우선시된다”(Waldron 1992, 27)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나간 일은 지난 일로 남겨둬야 하는 것일까?

이 시점에서 상속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상속이라는 개념은 세대 간의 연결 고리를 찾는 데 있어 도덕적으로 적절한 의미를 제공해 준다. 상속의 전형적 사례는 재산 상속이다. 한 세대의 구성원은 자신의 재산권을 다음 세대의 구성원에게 넘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양도를 정당하다고 여긴다면, 정의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될 수도 있다. 재산 상속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전 세대의 행위가 지금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부여받은 권리에 차이를 만들어 낸다고 주장한다. 노직(Robert Nozick)과 같은 역사적 소유권 이론가들은 “과거의 상황이나 행동이 사물에 대한 차등적 권리나 공적(desert)을 만들어 낼 수 있

다”(Nozick 1974, 155)는 생각이 정의의 역사적 원칙에 부합한다고 여긴다. 만약 우리가 소유권이 세대를 가로질러 양도될 수 있다는 원칙에 기꺼이 동의하고 자원의 세대 간 재분배를 요구하는 평등주의자들의 주장을 거부한다면, 분배적 정의 이론 — 우리 사회 내의 혜택과 부담을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할 것인지 검토하는 — 을 과거지향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입장과 최소한 일정한 관련성을 갖게 된다. 또한 이러한 시각은 역사적 부정의 — 특히 재산의 강탈 또는 무단 이용과 관련된 — 에 대한 교정을 주장하는 입장들에게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 만약 A 집단의 조상이 B 집단의 조상의 재산을 훔쳐서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면, B 집단은 최소한 그 물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명백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는 비록 A 집단이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B 집단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상속받았다는 논리가 적용된다. 이러한 설명은 상속의 도덕적 정당화 가능성 — 혹은 적당성 — 에 관한 주장에 확실히 기초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물건을] 지속적으로 점유해 온 것이 소유권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반박들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일부 학자들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자와 관련해서 톰슨(Janna Thompson)은 특히 상속의 권리를 문제로 삼는 세 가지 관점 — 결과주의, 평등주의, 공적 — 을 제시하며 “상속의 권리는 지난 200여 년간 서구 사상을 지배해 온 대부분의 도덕적 관점에 의해 비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Thompson 2002, 109). 후자와 관련해서 월드론은 사물에 대한 소유권은 권리 보유자가 그 사물을 계속해서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타인이 재산을 강탈한 경우와 같이 이러한 조건이 상당 기간 충족되지 못한다면,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고 역사적 부정의는 사라지게 된다. 강탈된 재산이 부정의를 겪은 피해자의 후손들에게 상속된다는 것을 옹호하는 주장은 이와 같은 비판들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서는 분배적 정의를 과거지향적 시각에서 보는 입장이 두드러지고, 최소한 제한적으로나마 재산 상속권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유의 특정한 항목과 관련하여 어떻게 상속성 이론이 옹호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sup>5)</sup>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악탈된 문화재의 반환처럼 [권리의 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 자명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데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파르테는 신전의 유물과 베냉의 청동 주조물과 같이 현재 대영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지만 영국이 취득하게 된 경위는 좋게 말해 봐야 확실치 않다고 할 수 있는 문화재들이 그 예이다.

우리가 특정한 사물의 상속과 같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경우에서 벗어나 상속의 개념을 확장하고자 할 때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것은 이전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배상하는 문제를 살펴볼 때 자명하게 알 수 있다. 배상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상속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두 가지 주장 모두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논쟁적이다.

첫째, 왜 우리는 부모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상속이 비자발적으로 보이는 다음 세대로의 재산 상속의 경우와 충분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몇몇 공동체주의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닌 많은 이들에게는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대물림된다는 주장처럼 위협천만하게 여겨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현 세대가 과거의 부정의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배제한 채, 현 세대가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부정한 행동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면—그러한 혜택을 본의 아니게 누렸다 하더라도—교정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Butt 2007; Butt 2009, 4장). 이 같은 주장은 식민지 수탈로 뒷세대가 혜택을 받은 경우를 고찰할 때에는 유용하지만, [일본의 경우와 같이] 파멸적인 군사적 패배로 끝난 전시 권력의 행사 문제를 다룰 때에는 덜 유용한 것처럼 보인다.

둘째, 누군가 예술 작품이나 돈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남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개인들의 배상받을 권리가 사물에 대한 재산권처럼 타인에게 양도될

---

5) 자세한 내용은 Butt(2009) 5장과 Simmons(1995)를 참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톰슨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상속에 기반하고 있는 배상에 대한 접근 방식은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정의의 종류에 한계를 부여한다. 그 요구는 빼앗긴 소유물의 회복이나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국한된다. 후손들은 선조들을 살해, 고문, 납치하거나 학대한 것, 즉 그들을 인간적으로 멸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러한 역사적 부정의가 피해자가 지닌 과거의 기억 속에서 얼마나 큰 불안으로 다가오던지 간에 말이다”(Thompson 2002, 108).

배상은 고통 받은 개인이 입은 손실을 갚는 것을 뜻한다. 개인이 죽는다면, 배상을 받을 권리가 그녀와 함께 소멸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인가? 후손들이 역사적 부정의로 인해 손해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 이러한 생각은 뒤에서 논박될 것이지만 —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 손해가 없다면, 많은 이들은 왜 그들이 배상의 자격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두 가지 비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나는 현 세대가 역사적 과오에 대한 집단적 책임을 상속받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이 오늘날 포괄적인 교정의 의무를 낳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또한 나는 역사적 부정의를 바로잡지 않는 것이 지니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상속이라는 사고를 통해 현 세대가 왜 배상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배상을 받을 권리 그 자체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배상을 받지 못해서 입은 피해 때문에 배상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 III. 배상할 의무의 상속성

세계 2차 대전의 끝나고 위안부 제도의 직접적 피해자들은 배상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다. 가장 명백한 피해자 집단은 바로 위안부 여성 자신들이다. 그들이 끔찍한 범죄행위의 피해자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잘못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포함하는 직접적인 교정의 의무를 지닌다. 앞서 언급했듯이 나는 [지금까지 사죄와 배상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교정의 의무도 위안부 제도의 피해자들에게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죄의 형식에 관한 문제는 복잡하다. 일본의 역대 정부들이 [2차 대전 중 자행된 역사적 부정의에 대해 사죄를 하고, 다양한 형태의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제도의 피해자들은 이러한 표현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왔다. 사죄의 내용은 배상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으며, 위안부 문제의 경우엔 더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일본 정부는 생존자들에게 직접 충분한 배상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거부해 왔다. 대신 시민들의 개인적인 기부로 설립된 '아시아 여성 기금'을 통해 제한적인 배상을 진행해 왔다. 피해자들이 이러한 대응을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사죄와 보상이라는 교정적 정의의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와 같은 사례가 지니는 특징을 통해 잘 드러난다.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배상을 한다면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많은 이유에서 문제가 된다. 물론 배상이 잘 이루어져서 사과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때로는 가해자가 배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실 그 자체가 잘못을 시인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내가 가게에서 책을 훔쳤다고 가정해보자. 5년 후, 나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가게 주인에게 책의 가격에 얼마를 보태어 수표를 보낸다. 이 경우 내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경우 과거의 잘못에 대한 후회는 보다 간접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이때 한 가지 발생하는 문제는 부정직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밝히는 방식에는 대체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사죄를 표명하는 것은 가해자가 사죄하고 있는 문제를 명확

하게 밝히는 기능을 갖는다. 이것은 위안부 문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부정의를 밝히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피해자들이 매우 큰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 첫 번째는 위안부 여성들이 다수의 강간 사례를 포함하는 제도적으로 승인된 성적 노예상태의 피해자들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들이 반복적으로 성적 폭력을 당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적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제가 되는 잘못의 성격을 기술하지 않고 단순히 배상 지불을 말하는 것은 기껏해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sup>6)</sup> 이 경우 핵심은 분명하다. 위안부 제도의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지니는 의무 중 물질적 배상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의의 피해자들이 겪는 손실은 비단 물질적인 손실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부정의한 행동의 핵심이 절도의 경우와 같이 재산 탈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행동의 피해자들은 물질적 재산을 잃게 되어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물질적 손실로 인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지만 또한 그러한 경험 자체가 트라우마가 되어 개인적 안전 등의 의미에서 지속적인 고통을 겪으며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부정의의 피해자가 겪은 피해에 대한 배상은 이상적으로는 부정의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동등한 지점까지 복지(well-being)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피해자들의 복지가 최대한 이 지점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를 바로잡으려면, 배상을 지불하는 맥락이 큰 중요성을 갖게 된다. 이로부터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배상만으로는 역사적 부정의를 바로 잡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공개적인 사과가 필요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만약 부정의를 바로 잡으려면, 배상하려는 사

---

6) 자세한 내용은 Card(2002)를 참조. 이 책을 참고하는 데는 쿠마르(Rahul Kumar)의 도움을 받았다.

람의 정체성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배상을 받을 권리에 대한 오닐(Onora O'Neill)의 해석은 유용하다. 그녀는 '회복'(restitution)과 '배상'(compensation)을 구분하고자 한다. 오닐이 보기에 회복은 “잘못이 저질러지기 이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맺고 있던 상태로 복원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응답이라기보다는 그들 사이의 단절된 도덕적 관계에 대한 반응이다”(O'Neill 1986, 74). 따라서 회복의 경우엔 그러한 변화를 이루려는 행위자의 정체성이 관건이다. 그녀는 “회복은 대신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 손실된 것 혹은 이와 상징적으로 유사한 것은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나 그들의 자손 또는 대리인을 통해 복원되어야 한다”(O'Neill 1987, 74)고 말한다. 오닐에게 있어 배상은 회복과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 배상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파열된 도덕적 관계가 아니라 당사자들, 그중에서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에게 전적으로 초점을 맞춘다. 그러므로 “배상은 회복과 처벌과는 달리 [다른 행위자가 대신할 수 있다.……만약 누군가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입은 손실에 해당하는 것을 제공한다면 피해자는 배상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꼭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나 그들의 상속자 혹은 대리인이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배상은 대신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O'Neill 1987, 75). 그러나 몇몇 배상의 형태는 배상이 대신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만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범죄행위의 경우 제3자가 아닌 그 사건과 연관된 특정 행위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sup>7)</sup> 범죄행위의 피해자들은 아마도 그 행위에 특별히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상을 받기를 매우 원할 것이다. 피해자에게 완전히 배상하는 — 혹은 최대한 그와 가깝게 배

---

7)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는 행위자가 해당 사건과 꼭 관련 있는 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내가 피해를 입어서 그로 인해 반복된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내가 이전의 고통이 없던 상태로 되돌아가기 바란다면 세상의 모든 돈을 주더라도 나의 고통을 배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어린 시절 연인이 내 결혼을 받아준다면 나의 복지는 이전 상태와 동등한 지점으로 향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그녀, 오직 그녀만이 나의 상실을 메워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

상하는 — 유일한 방법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배상을 지불하는 것이다. 만약 외부의 강압이 없이 진실되게 배상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히 보상금의 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과와 역할도 하게 된다. 이때 사과는 그 자체로 피해자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 한편 가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배상하도록 하는 것만이 피해자에게 완전한 보상을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처벌받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열망을 갖는다. 피해 배상의 금전적인 가치는 부수적일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들이 부담하는 물질적 손실이다. 위안부 여성 문제의 경우, 제3자에 의한 보상금의 지불이 피해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바는 역사적 부정의를 저지른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행위자들이 충분히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이다.

위안부 제도에 누가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임에 틀림없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역사적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서, [당시] 일본 정부 내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누가 무슨 명령을 내렸고, 누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누가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정말 몰랐는지 말이다. 우리는 자신이 심각한 도덕적 잘못과 관련되었음을 알게 된 군인과 민간인들이 갖는 도덕적 책임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또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사람들이 집단적 죄책감을 지닐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어떠한 정책이나 정권에 반대한 개인들이 저질러진 잘못에서 면죄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들은 형사사법정의(criminal justice)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질문들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이루어진 심의의 핵심 질문들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 질문들을 모두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인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지도자들이 저지른 과오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이는 집단으로서 일본인들이 도덕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개별적으로 일본 시민들이 도덕적인 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간단히 말해 나는 주장은 일본인들이 2차 대전 이후 그들의 정부가 전쟁 중 저지른 범죄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집단적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밀러(David Miller)는 오노레(Tony Honoré)의 ‘결과적 책임성’(outcome responsibility)이란 개념을 사용해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어떤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러한 결과들을 그 사람의 탓으로 돌리게 된다. 만약 다른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면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이득과 부담을 그 행위자가 떠안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그 결과로 타인이 해를 입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결과적 책임성은 그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무를 수반할 것이다”(Miller 2004, 244-245).

나는 이 글에서 이 주장을 길게 검토할 여유가 없다. 비록 논쟁적이기는 하지만 일본인들이 종전 후에 이와 같은 집단적 의무를 갖고 있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해두고 넘어가고자 한다. 내가 품은 진짜 질문은 의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는가이다. 이 의무가 그 다음 세대에 상속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나는 다른 글에서 위안부 문제와 같은 유형의 사례들에서는 [집단적 의무의 상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Butt 2006, 356-357; Butt 2009, 6장). 나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점에 기초한다.

- ① 최소한 일부 경우에, 인민(people)이 그들 지도자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가능하다.
- ② 사람들은 계승되는 세대가 아니라 중첩적인 세대로 구성된다.
- ③ 부정의한 행동을 바로 잡지 않는 것 자체가 부정의를 낳는다.

여기서 핵심은 위안부 여성들에게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는 데 책임이 있는 실체, 즉 [집단으로서의] 일본인들이 각각의 개인들과는 다른 종류의 존재라는

점이다. 대신 이들은 특정한 집단적 형태로 볼 수 있는데, 프렌치(Peter French)는 이를 집성 공동체(conglomerate collectivity)라고 표현해 왔다.

“집성 공동체는 개인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그들의 [개인적] 정체성은 조직 내의 집단적 정체성과 결합되어도 소멸되지 않는다. 뭉쳐진 집단의 존재는 다양한 멤버십과 양립이 가능하다. 집단에 속해있는 특정인의 [개인적 정체성의] 변화는 그에 상응하는 집단 정체성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French 1984, 13).

아이들에게 부모의 죄를 묻는 것이 잘못 되었음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히 별개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단으로서] 인민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인민의 정체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서히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부정의를 바로잡지 않는 것 자체가 부정의를 낳는다는 사실과 함께 인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잘못을 교정하지 않은 데 대해 집단적인 책임을 갖게 한다. 새로운 구성원들도 집단적인 잘못에 대해 지속되어 온 책임을 부여받게 되며,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배상을 거부당한 사람들로 부터 배상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요구가 실제로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기 위해 다시 위안부 문제로 돌아가 보자. 일본은 1945년부터 1952년까지 연합군에 점령되어 있었고, 주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일본은 이 기간 동안 배상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이것은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소멸되었음을 의미하는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1945년 당시의 “일본인”들이 1952년의 일본인과 정확하게 동일한 실체가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집단 구성원의 일부는 죽었고, 새로운 구성원이 태어났다. 그러나 1952년 당시의 일본인 대부분은 1945년에도 존재했던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위안부 사례가] 지속되는 교정의 의무를 주장할 수 있는 분명한 사례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일본이라는 나라가 처한 상황과 관련해서 어떠한 주장도 펼 필요가 없다. 만약 우리가 1945년의 일본인들이 집단적인 교정의 의무를 소유하고 있었

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1945년의 집단 구성원 대부분이 살아있었으므로 1952년에도 그들이 집단의 다수가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일본인들의 구성원이 변화했다고 해서 [과정의 부정의에 대한 교정의 의무를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구성원이 달라지면 교정의 의무가 사라진다고 본다면, 출생과 죽음이 동시에 나타나는 하루의 시간만 흘러도 교정의 의무가 소멸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족은 계승되는 세대가 아니라 중첩적인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한 세대가 단순히 다음 세대를 대체한다고 가정하는 모델들에서 세대간 정의(intergenerational justice)에 관한 문제들을 검토할 때 자주 간과된다. 정말로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대체된다면, 집단적인 교정의 의무가 시간을 가로질러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으로 봐서 우리는 1952년과 마찬가지로 2010년의 일본인들도 지속되어온 잘못에 대한 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만약 위안부 제도의 생존자들이 1952년에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면, 전시에 그들에게 고통을 야기한 결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도 살아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녀들의 배상 요구가 무효화될 수 없다. 위안부 제도의 생존자들은 2차 대전 동안 자행된 역사적 부정의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그 이래로 계속되어 온 부정의의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이 교정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올수록 부정의는 커져왔다. 따라서 설사 본래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더 이상 살아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 세대의 사람들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온 잘못과 관련이 있다. 일본 정부는 2차 대전 직후 배상을 할 수 있었을 때 가능한 빨리 배상을 했어야 했다. 배상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 과정에서 새로운 부정의가 만들어진다. 즉 계속되는 배상 회피로 인해 생기는 부정의, 다른 말로 하면 배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배상하지 않는 부정의가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일본은 위안부 제도의 피해자들에게 상속된 교정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 IV. 배상받을 권리의 상속성

우리가 앞 절에서 전개된 주장에 동의한다고 가정해보자. 위안부 여성들에게 배상을 거부해 온 계속된 일본 정부의 행동은 심각한 부정의를 낳는다는 것이다. 전쟁의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은 전쟁 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종전 후] 일본 정부의 지속되어 온 행동에 의해서도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아직도 생존해 있는 위안부 여성들은 사죄와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전시에 저질러진 최초의 역사적 잘못보다는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기를 거부해 온 것에 대한 사죄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최초의 역사적 부정의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받을 자격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위안부 제도의 직접적 피해자의 다수가 살아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대다수는 전쟁 중에 가해진 폭력의 직접적인 결과로 죽임을 당했으며, 다른 이들은 그 이후에 세상을 떠났다.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점차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일본의 교정의 의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해왔음을 의미하는가? 나는 이 절에서 그렇지 않다는 주장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원피해자가 현존하지 않을 경우 역사적 과오에 대한 이상적인 대응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는 항상 너무나도 유감스러운 일이며, 특히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역사적 부정의를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서 나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위안부 여성들의 가족들에게 배상이 지불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세 가지 가능한 방식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나는 세 가지 모두에 공감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는 이론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토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 지나간다. 나의 목적은 세 번째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다. 교정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능한 세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최초의] 부정의한 행동으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 왔을 때.

② 피해자들에게 사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때.

③ 배상이 지불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 왔을 때.

이 세 가지 경우가 모든 가능성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집단의 구성원이 집단 외부의 행위자에게 피해를 당했거나,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더 이상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민족과 같은 집단에 교정의 의무가 귀속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다. 만약 누군가 이런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다른 국가의] 강압에 의해 자신의 구성원들이 성적 노예가 된 국가들에 대해 [가해 국가가] 배상을 지불해야 하는 사례를 구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절에는 특히 위안부 여성들의 가족 구성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요구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나의 주장은 개인과 집단과의 관계와 결부된 논쟁적인 주장에 기초할 필요가 없어진다. 실제로 이 경우엔 위안부 제도의 일본인 피해자들의 가족들도 다른 국가의 피해자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 1. 최초의 부정의한 행위로 인한 피해

가족 구성원들에게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직접적인 사례는, 이들이 최초로 저질러진 부정의해 의해 피해를 받아왔다는 주장에 기초한다. 이 같은 주장에 따르면 그들 또한 최초의 부정의한 행동의 피해자들이다. 그들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위안부 제도의 피해자라는 사실로 인해 개인이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를 겪을 수 있음을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주로 최초의 부정의가 자행되었던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위안부 여성들

의 후손들에게 관심을 두는 경우, 이 같은 주장을 펴는 데에는 실질적이고 이론적인 중대한 장벽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후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출생하기 이전에 저질러진 행동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가령 내가 도시의 중심부에 폭탄을 묻고 타이머를 장착해서 100년이 지난 후에 폭발되게 했다고 가정해보자. 100년이 지나 폭탄이 터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될 것이다. 폭발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나의 행동 때문에 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설사 내가 죽은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젊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 상황에 대한 명백한 반사실적인(counterfactual) 상태는 내가 폭탄을 심거나 장착하지 않은 경우이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은 최소한 내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정의한 행동이 미래의 세대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경우라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것은 흔히 기존 연구에서 “비동일성 문제”(non-identity problem)로 언급되는 것이다.<sup>8)</sup> 개인들의 존재는 특정한 정자가 난자와 접촉하는 특정한 때에 잉태되어 결정된다. 개인들의 삶의 행보에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건이란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태어난 아이와 상이한 개인적 정체성을 갖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만약 역사적 과오로 인해 현재의 개인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그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과연 옳은 주장인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 나는 다른 글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배상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반사실적 추론이 갖는 역할을 잘못 이해한 것이며, 역사적 부정의의 경우에 도덕적으로 적절한 반사실적 추론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부정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동일한 [정체성을 지닌] 개인이 태어날 수 있었던 세계

---

8) Parfit(1984, 351-355)를 참조.

라고 주장한 바 있다(Butt 2009, 102-117). 그러나 이 문제와는 별개로 현재의 후손들이 만약 위안부 여성 제도가 없었더라면 그들이 처했을 상황보다 오늘날 더 나쁜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즉 최초에 자행된 부정의의 직접적인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분명한 손실을 입증하는 것은 (적어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의심할 여지없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이다.

## 2. 피해자들에게 사후적 혜택의 제공

두 번째 접근 방식은 정확하게 상속과 관련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당사자들이 역사적 부정의의 피해자들의 후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수반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피해자의 후손이 배상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배상해 주는 것을 원했을 것이라는 근거에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리지(Michael Ridge)에 의해 주창되었으며, 이는 다음의 세 가지 주장에 기초한다(Ridge 2003, 38-59).

- ① 배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지른 부정의의 피해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 ② 우리는 죽은 사람들의 열망을 만족시켜 줌으로써 그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다.
- ③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자손들이 번성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위안부 사례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내 생각에 이러한 접근은 후손들에 대한 배상을 주장하는 데 있어 강력한 뒷받침이 된다. 물론 우리가 [돌아가신] 위안부 여성들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랬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와 같이 그들도 분명 자신들의 후손들이 혜택을 받길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리지가 자신의 논문에서 시인한 것처럼 이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며 단호하게 거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리지의 견해가 갖는 타당성은 로마스키(Lomasky)가 말한 “생애를 초월하는 이익”(lifetime transcending interests)을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수용하는지에 달려 있다(Lomasky 1987). 만약 죽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긴다면 리지의 주장은 호소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 나는 이와 같은 논쟁적인 형이상학적 주장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에 앞서 위안부 여성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리지는 자신의 주장에는 사실상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죽은 사람들에게 보상해야 할 의무가 지닌 영향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한다. 왜냐하면 그 후손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죽은 사람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시간이 지나면서 축소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직계 자손에 대해서는 매우 신경을 쓰지만 3세대나 4세대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대개 신경을 적게 쓴다. 실제로 몇 세대 후에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대한 관심보다 더 크다”(Ridge 2003, 52).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죽은 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다. 꼭 그들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속한 민족이 혜택을 받았다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말하는 민족적 감정을 지닌 많은 사람들의 경우처럼, 국제적 사례들에서 세대 간의 인계를 주장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보다 폭넓은 관점이 있는데,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의의 가해자들이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배상을 지불하는 것을 거부하면 보상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을 일종의 “탈출 조항”(get-out clause)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부정의를 바로 잡을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도덕적 위협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 잡기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죽은 부정의의 피해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의 창은 있다. 이것은 그들의 죽음 후에 갖게 되는 기회이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 행동이 취해지지 않으면 부정의는 교정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특정한 형태의 도덕적 잘못이 내재하게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는 [에초의 잘못된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지 않고 방치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도덕적 균형이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손상됨으로써 생기는 잘못이다. 만약 우리가 리지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일본인들이 의미 있게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죽은 이후에도 교정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짧은 시간 내에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 3. 배상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

마지막으로 부정의의 피해자에게 배상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그 후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검토할 차례이다. 이렇게 접근할 경우 우리는 최초로 행해진 부정의 그 자체가 피해자들의 후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렇다면 배상을 하지 않아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가? 배상이 실제로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후손들이 오늘날 상당히 나아진 조건에서 살아가지 않았겠는가? 다른 학자들이나 내가 다른 글을 통해 주장한 바 있듯이, 배상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부정의를 낳는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은 최초로 자행된 부정의로 인해 [그 가족과 후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첫 번째 주장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을 피할 수 있게 한다.]<sup>9)</sup> 예를 들어

후손들의 출생 직후에 배상이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면, 비동일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확고하게 복잡한 반사실적 추론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된다. 배상이 즉시 이루어졌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누가 알겠는가? 후손들이 [배상받을 권리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할 근거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배상받은 것을 다 써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않을까?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정적 사실도 없다.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쓰지 않고 간직하는 것을 선택했을지, 그리고 그들이 타인이 아닌 자신의 후손들에게 배상받은 것을 물려졌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톰슨은 역사적 부정의를 교정하는 것이 지나는 불확정성에 대한 월드론의 논의를 언급하면서 이 점을 강조하였다. 그녀는 후손들이 조상들이 강탈당한 재산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려면 “만약 부정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그 재산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선택이 수반된 곳에는 아무런 확정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최선의 추측조차도 자주 혼란을 낳는다. 부정의의 피해자들은 소유물을 빼앗기지 않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이를 다 써버렸을 수 있다. 그들은 [그 소유물을] 도박으로 탕진하거나, 잘못된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줘 버리거나 혹은 자신의 사업에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피해자의 바로 다음 자손들조차도 만약 부정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자신들이 그들 조상의 재산을 물려받았을 것이라고 가정할 권리는 없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정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갈수록 후속 세대들에 의해 더 많은 선택이 이루어지고, 이 가정은 더욱 신뢰성을 잃게 된다”(Thomson 2002, 111-112).

---

9) 이에 대해서는 Boxill(2003); Butt(2006); Cohen(2008); Sher(2005)를 참조.

이로써 위안부 여성들이 배상을 받지 못함으로써 그들의 후손들이 해를 입는다는 주장에 중요한 비판이 가해진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후손들이 아무런 배상도 상속받지 못했을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부정의를 바로잡지 않은 것 자체가 부정의한 행동을 낳는다는 주장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배상하지 않는 것이 부정의를 낳는다는 주장과 그와 같은 경우에 상속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결합한다면, 후손들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건실한 주장을 펼 수 있을 것이다. 배상이 제때에 이루어졌다하더라도 많은 경우 후손들이 배상 받은 것을 물려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앞서 부정의를 교정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부정의라고 주장했다. 이는 부정의를 겪은 피해자들의 후손들이 지니는 권리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상해 보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B의 삶의 질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었다. A는 B에게 상당한 배상의 의무를 지닌다고 직접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배상을 통해 A가 B에게 가한 피해를 복구하려고 해야 한다. 그렇다면 B가 먹을 수 있는 알약이 있는데, 이 약을 통해 A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약은 매우 비싸서 B는 부담할 수 없다. 그러나 A는 부자이기 때문에 그 약을 쉽게 살 수 있다면 A는 B를 대신해 약값을 지불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A가 B에게 해를 입히는 순간 발생하며, A가 B에게 갚아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다. A의 행위로 인해 B가 겪게 되는 곤경에서 비롯된 그 이상의 의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A가 즉시 약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부정의는 곧바로 가속화된다. 왜냐하면 B는 A가 교정의 의무를 다했더라면 피할 수 있을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B에게 가해지는 부정의는 점차 커지는 것이다. 이제 A는 단순히 약값만큼만 B에게 빚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약값은 부정의가 행해졌을 당시의 책임일 뿐이며, B는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배상에 대한 필요 속에서 고통과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이 B가 겪는 고통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반면, 악화된 부정의에 대한 배상의 경우는 B의 고통과 직결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B가 부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B가 겪어 왔던 고통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고통은 발생해 왔고, 그것이 바로 역사적 사실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배상의 목적은 이러한 고통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B가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던 상태를 떠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그녀가 고통을 겪기는 했지만, [이러한 고통을 만회시켜 줄 다른 혜택을 받고 있어야 한다.<sup>10)</sup> 따라서 만약 A가 부정의한 행동을 저지른 지 5년 만에 약값을 배상하기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B가 지난 5년 간 겪은 고통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게 된다. 5년간 겪은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 수준이 10,000 파운드라고 가정해 보자. B는 죽음을 앞두고 A를 불러 자신의 딸 C에게 남길 수 있도록 A가 자신에게 빚진 것을 갚도록 요청한다. A는 이를 거절하고 B는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다. 이 경우 우리는 C의 권리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C가 10,000 파운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이를 주장할 수 있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A에게] 10,000 파운드를 받을 권리를 [B로부터] 그녀(C)가 상속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B로부터 10,000 파운드를 상속받지 못해 피해를 입어 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주장처럼 보인다. 나는 앞에서 다른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은 것에 근거해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와 소유권을 지니고 있는 재산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Butt 2009; Waldron 1992). 넓은 의미에서

---

10) 이때, B가 잘못을 당하지 않았을 경우와 부정의의 피해자로서 배상을 받았을 경우를 동일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실령 배상을 받아서 부정의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보다 모든 면에서 나은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B는 부정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권리를 상속받았다는 첫 번째 주장은 피해를 입어왔다는 두 번째 주장보다 직접적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 [배상이 이루어졌다면 자신에게 상속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가정과 같은 어떠한 반사실적 추론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이다. 권리가 상속되었다는 주장은 다른 사람이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재산 가운데 자신의 소유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니고 있는 배상받을 권리가 소유권과 유사하게 다루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이 사례의 경우엔 두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더라도 유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마땅히 해야 할 배상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배상의 의무를 낳는 부정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두 방식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자. D는 죽음에 임박해 있으며, 자신이 죽는 순간 모든 재산이 E에게 양도된다는 유언을 작성한다. D가 죽기 바로 직전 F가 순식간에 이 모든 재산을 파괴해 버리는 폭탄을 폭발시킨다. 그 사이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D는 세상을 떠났고, E는 상속받을 재산이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물려받지 못한다. 이 경우 E의 손실은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F의 행동으로 인해 D는 F의 재산 중 그가 손상시킨 만큼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으며, D의 죽음으로 이 자격은 D에게서 E로 상속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니면 보다 직접적으로 E는 F의 행동으로 인해 명백히 악화된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에 F가 E에게 해를 입혔다고 말할 수 있다. D가 세상을 떠난 지 10초 후, E는 분명 F가 재산을 파괴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나쁜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F는 자신이 파괴한 소유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을 E에게 지불할 의무를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가 E에게 이와 같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면, E에게는 부정의를 지속시킨 죄가 부여된다. D가 죽는 순간부터 E가 배상을 받지 못하는 한, E 자신은 이러한 부정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정확하게 E를 피해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늘 지속적인 배상 거부 행위가 지닌 특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E가 입은

피해는 F의 행위로 인해 D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순간 그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F가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되어 왔다고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노름꾼이 되어 매번 노름판에서 자신이 가진 돈을 다 날려버리는 피해자의 후손이 있다고 해보자. 우리는 죽은 그의 부모가 자신들이 겪은 부정의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가정해보자. 피해자의 자식이 스스로 부정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만약 그의 부모가 죽기 전에 배상이 이루어졌다면, 그는 그 배상금을 상속받았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 10년이 지난 시간이 흐른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끊임없이 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왔다. 10년 후에도 그가 부정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 배상이 이루어졌더라도 — 그가 노름으로 날려 버렸을 것이기 때문에 — 대부분이 그의 수중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예를 들면 그는 1년간 배상금을 모두 저금해 두었다가 매년 그의 생일날 룰렛 게임의 13번에 건다. 그는 지난 10년간 매년 이 게임으로 돈을 날려버린 것이다). 그래서 배상이 지불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배상을 받지 못한 현재보다 더 나은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권리를 상속받았다는 [첫 번째] 주장을 적용하면 여전히 [배상 받을 자격이 있다는 주장을 펼 수 있는 반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두 번째] 설명을 적용하면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의 성격을 잘못 규정한 것이다. 그는 10년 전 당시에 배상을 받지 못한 부정의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그 시점 이후 끊임없이 배상을 거절당함으로써 발생한 부정의의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가 1년 후 첫 번째 생일날 도박을 하기 10초 전에 배상을 요청했다고 상상해 보자. 이 요청은 거절당했다. 그는 노름을 했고 10초 후에 다시 배상을 요구했다. 여기서 그가 자신이 지닌 돈으로 도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상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만일 그러하다면, 10초가 아니라 10년이 흘러도 그의 요구에는 달라지는 바가 없을 것이다.

점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이 사실상 도덕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월드론(Waldron 1992)은 재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사물에 대한 소유권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배상받을 권리를 상속받았다는 설명이 아니라 [배상 회피로 인해 피해를 받아왔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이해하게 되면 이러한 주장이 이 사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점이 중요하다. 이것은 누군가 잃어버려 수년간 보지 못한 소유물을, 다른 이가 발견해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하게 활용한 사례가 아니다. 그보다는 배상 회피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가해 행위가 되어, 계속해서 피해자의 이익이 증진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 부정의에 대한 배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정의에 대해 배상을 계속해서 거부해 온 것에 대한 배상을 얘기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교정을 거부하는 행위자는 시계를 계속해서 초기화시키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 절에서 전개된 주장들을 정리해 보자. 직접적인 피해자인 위안부 여성들은 그들이 2차 세계대전 동안 겪었던 고통에 대해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 일본 정부가 이들 개인들에게 배상하지 않은 것은 부정의를 계속 지속시키는 해위이며, 이는 그 자체로 배상의 의무를 낳는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살아 있는 동안 위안부 여성들은 배상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그들이 생존해 있을 때 일본 정부가 배상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직접적으로 해악을 끼친다. 이는 그들의 후손들도 부정의의 피해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일본 정부가 그들에 대해 배상 의무를 갖게 되었음을 뜻한다. 배상이 지불되지 않는 한, 일본 정부는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부정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제시된 주장은 다른 이로부터 [배상의 권리를 상속받은 사람들과 관련된 것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만약 누군가 상속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거부한다면, 이 주장은 대부분 혹은 모든 설득력을 상실한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평등주의자인 사람이 있고, 각 개인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자원을 동일하

게 나눠 가질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믿는다고 상상해 보자. 이 경우 다음 세대의 불평등한 출발점을 낳는 상속은 그 자체로 부당한 것이 된다. 평등주의자들은 모든 재산에 대해 100%의 상속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이후 모두에게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부정의를 당한 피해자의 후손들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을 잃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평등주의적으로 세대간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만 옹호될 수 있다. 나아가 만약 국제적 수준에서의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사해동포적이고 지구적인 차원에서 평등하게 세대간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이와 같은 이상이 실현되는 것은 쉽지 않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교정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재분배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분배적 정의에 대한 미래지향적 설명에 근거해서 이러한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과거사에 대한 교정 요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미래지향적인 방향이나 과거지향적인 방향 중 어느 한쪽과는 연결될 수 없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내 질문은 교정에 대한 요구가 분배적 정의에 대한 과거지향적 설명과 꼭 갈등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상속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받아들인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만약 상속을 진정으로 반대한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 경우 우리는 이상적 이론과 비이상적 이론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는 과연 추정적인(putative) 교정의 의무가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상황을 더 좋게 만들 것인지의 여부이다. 만약 교정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일이 더 복잡해진다는 점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평등주의자이고, 평균보다 적은 재산을 지닌 집단이 매우 부유한 집단에게 배상을 해야 할 교정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는 정말 복잡한 갈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상황이 역전되어 부유한 집단이 보다 가난한 집단에게 배상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 상

황이 되면 문제는 훨씬 간단해진다. 여기서 분명하게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은 부유한 행위자가 교정의 의무를 회피하려고 하고, 애초에 그들의 부가 용인되지 않았을 분배적 정의에 호소하면서 자신의 부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상속의 관행을 용인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지구적 차원의 평등을 증진시키려 하지 않는, 매우 부유한 국가이다. 위안부 여성들의 후손들의 요구가 어떻게 분배적·교정적 정의와 상속의 부당성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에 관한 주장을 근거로 거부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우리는 혜택과 부담의 분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 역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우리가 태어난 나라와 부모의 정체성은 우리 인생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실 세계에 과거지향적 시각이 존재하는 한, 과거의 사건은 오늘날 누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다. 타인에 대한 교정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과거의 역사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기회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일본은 매우 심각한 정도로 이러한 교정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 번역: 이선영(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참고문헌

- Barkan, Elazar. 2000. *The Guilt of Nations: Restitution and Negotiating Historic Injustices*. New York: Norton.
- Benjamin, Walter. 1940. *Theses on the Philosophy of History*.
- Boxill, Bernard R. 2003. "A Lockean Argument for Black Reparations." *The Journal of Ethics* 7, No. 1, pp. 63-91.
- Brooks, Roy L. 1999. *When Sorry Isn't Enough: The Controversy over Apologies for Human Injustic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Butt, Daniel. 2006. "Nations, overlapping generations and historic injustice."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43, No. 4, pp. 357-67.
- \_\_\_\_\_. 2007. "On benefiting from injustice."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37, No. 1, pp. 129-152.
- \_\_\_\_\_. 2009. *Rectifying International Injustice: Principles of Compensation and Restitution Between N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ard, Claudia. 2002. *The Atrocity Paradigm: A Theory of Evi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hen, Andrew I. 2008. "Compensation for Historic Injustices: Completing the Boxill and Sher Argument."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37, No. 1, pp. 81-102.
- French, Peter. 1984. *Collective and Corporate Responsibil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irsch, Afua. 2000. "UK 'using obscure legal principle' to dismiss torture claims in colonial Kenya." *The Guardian*, January 25.
- Lomasky, Loren E. 1987. *Persons, Rights, and the Moral Commun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iller, David. 2004. "Holding nations responsible." *Ethics* 114, No. 2, pp. 240-68.
- Nozick, Robert. 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
- O'Neill, Onora. 1987. "Rights to compensation."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5, pp. 72-87.
- Parfit, Derek. 1984. *Reasons and Persons*. Oxford: Clarendon Press.
- Ridge, Michael. 2003. "Giving the dead their due." *Ethics* 114, No. 1, pp. 38-59.
- Sher, George. 2005. "Transgenerational Compensation."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33, No. 2, pp. 181-200.
- Simmons, John. 1995. "Historical rights and fair shares." *Law and Philosophy* 14, pp. 149-184.
- Thompson, Janna. 2002.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Past: Reparations and Historical Injustice*. Cambridge: Polity.
- Waldron, Jeremy. 1992. "Superseding historic injustice." *Ethics* 103, No. 1, pp. 4-28
- Williams, Bernard. 1985. *Ethics and the Limits of Philosophy*. London: Fontana.
- Yoshimi, Yoshiaki. 2002. *Comfort Women: Sexual Slavery in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World War II*.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Inheriting Compensatory Claims and Duties

## : Reparations to the Descendants of 'Comfort Women'

Daniel Butt

The 'comfort women' system perpetrated by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World War II was a serious act of injustice. This article addresses the question of whether present day individuals can be said to have inherited compensatory rights or duties as a result of this historic wrongdoing. It argues that contemporary members of the Japanese nation possess collective duties to rectify the ongoing failure of the Japanese government to fulfill its rectificatory obligations. It then maintains that not just survivors of the comfort women system but the descendants of the victims are entitled to compensation, as a result of the harm which they have suffered from the historic failure to pay compensation to their ancestors. The article puts forward a new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heritance to compensation and harm stemming from a failure to pay compensation to one's ancestors. This account is rooted in the idea that a failure to rectify injustice is itself an act of injustice: a seemingly obvious observation which significantly complicates the role of counterfactual reasoning in relation to historic injustice. The conclusion is that contemporary Japan possesses significant, unfulfilled rectificatory duties to the descendants of comfort women.

**Keywords:** comfort women, compensation, reparations, inheritance, historic injustice.